

**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유공자 등
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**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

**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유공자 등
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(이병학 의원 대표 발의)**

의안 번호	2026-68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연월일 2026. 9. 2.

이병학·김경순·태화순

발 의 자 김승자·정락재·안상미
장규철 의원(7인)

1. 제안이유

국가유공자 등의 주차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중과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다. 적용범위(안 제4조)

라. 우선구역의 설치장소 및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(안 제5조~제6조)

마.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(안 제7조~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국가보훈기본법」 제5조, 「주차장법」 제2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(정부의 시책)

나. 입법예고: 2026. 9. 2.~2026. 9. 7.

다. 비용추계: 붙임 미첨부 사유서 첨부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

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“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(이하 ‘우선주차구역’이라 한다)”이란 제4조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선주차 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.

1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
3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

4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
5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
6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 유공자 본인
7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
8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

제5조(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 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
2.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

② 구청장은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 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.

제6조(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)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
1.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. 다만,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
2.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,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.

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별표에 따른 바닥면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.

제7조(우선주차구역의 이용) ①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한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.

② 우선주차구역 관리자는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8조(위반차량 조치) 우선주차구역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판(제6조 관련)

1. 규격 및 색상

가. 규 격: 바닥면 가로 2,500mm × 세로 5,000mm,

표지판 가로 600mm × 세로 700mm

나. 색 상: 남색, 흰색, 적색

2. 도안 (국가보훈부 ‘국가유공자 상징’ 심벌 삽입)

가. 바닥면 표시



나. 안내표지판

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- 안 제5조(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) 및 제6조(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등)에 따른 비용 발생
- 안 그 외 조항 비용 미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 - *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비용추계 결과 ≍ 39,520천 원(연평균 7,904천 원)
 - 상세내역: 560천 원/면 × 52면 = 39,520천 원

(단위: 천 원)

구 분	1차년도 (2026년)	2차년도 (2027년)	3차년도 (2028년)	4차년도 (2029년)	5차년도 (2030년)	계
세 입	-	-	-	-	-	-
세 출	39,520	-	-	-	-	39,520

○ 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: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
- 설치시기: 조례 시행 1차년도에 전체 대상 일괄 설치
- 설치규모: 주차단위구획 총수가 3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(붙임1 참조) 52개소에 각 1면 설치
- 적용단가
 - 우선주차구획 표시: 2026년 주차구획선 도색공사 설계내역서 단가 및 G2B 공공조달 단가(붙임2 참조) 기준으로 1면당 560천원 적용
 - 안내표지판: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유사 규격 제품 조달단가(붙임2 참조) 기준으로 1개당 200천원 적용
-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, 추가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

○ 상세내역

- 우선주차구획 표시: 560천원 × 52면 = 29,120천원
- 안내표지판: 200천원 × 52면 = 10,400천원

4. 작성자 :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장 김명혜

붙임 1. 대상 주차장 현황 1부.

2. 상세내역서 1부. 끝.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「국가보훈기본법」

-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(財源)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「주차장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주차장”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.

가. 노상주차장(路上駐車場):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(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. 이하 같다)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(一般)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

나. 노외주차장(路外駐車場):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

다. 부설주차장: 제19조에 따라 건축물, 골프연습장,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(附帶)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·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

7. “주차단위구획”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.

□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3조(정부의 시책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·발전시키며,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.